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 2016. 05. 25

개정 : 2021. 03.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규칙 등(이하 “관련법규”라 한다)과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써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 운용보수는 운용기간 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 말하고,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산정된 방식에 따라 받는 금전을 말한다.
2. 판매회사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3. 신탁업자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6.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7.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

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8. 투자일임.자문수수료 :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기준)

-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5조(집합투자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 절차)

- ①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투자일임.자문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투자일임.자문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수료 지급주기, 지급시한, 수수료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일임.자문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일임.자문수수료)

-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자문과 관련된 투자결과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 외에 투자결과와 연동된 성과보수(이하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받거나,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것을 약정하는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수수료는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의거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설명의무)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의 금융위원회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